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710호 2019. 8. 7.(수)

거창사랑거창

| 선결 | 기관의 장 |
|---|---|
| | |

## 고 시

제2019-87호「신라촌 조성사업」거창군 창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
제2019-89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 공 고

제2019-970호「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5
제2019-973호 2020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자 공모 ····· 13
제2019-984호「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 ····· 14
제2019-990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 21
제2019-993호 도로구간과 도로명 변경 공고 ····· 22
제2019-994호 도로명 변경 공고 ····· 25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9-18호 2020년 전국규모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 공고 ·· 30

| 회 람 |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19 - 87호

# 『신라촌 조성사업』 거창군 창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농어촌정비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라촌 조성사업』 거창군창의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신라촌 조성사업 시군창의사업
2. **사업의 목적** : 가지리 일원 마을콘텐트 구축,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통한 농촌인구 유지 및 발전 도모
3. **사 업 구 역**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일원
4. **사 업 규 모** : 행정리 1개, 자연마을 8개
5. **면 적** : 808ha(답 157ha, 전 115ha, 임야 376ha, 기타 160ha)
6. **가구 / 인구** : 969호/2,809명
7. **사 업 비** : 1,580백만원(국 1,106, 도 142, 군 332)
8. **사업의 효과** :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통한 마을 콘텐츠 구축으로 주민소득 향상 및 농촌인구 유지 및 발전도모
9. **사 업 기 간** : 2017년 ~ 2019년(3년간)
10. **시 행 자** : 거창군수
1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
12. **주요사업개요**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신라촌 설화구전관 및 주민창의마당

    나. 지역경관개선사업 : 서동과 선화공주 테마길, 국경마을 벽화거리

    다. 지역역량강화사업 :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13.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 문화관광과 관광시설담당(☎ 055-940-3442)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19 - 89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7.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873-12 등 7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 비고 |
|---|---|---|---|---|
| (별 도 열 람) | | | |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 일련번호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고 시 일 |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 |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 |
| 1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172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873-12 | 2009-07-02 | 2019-08-07 |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 |
| 2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173-6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891-15 | 2009-07-02 | 2019-08-07 |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 |
| 3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722-5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476-48 | 2009-12-28 | 2019-08-07 |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 | |
| 4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13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주곡로 510-3 | 2009-12-28 | 2019-08-07 |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 된 도로 | |
| 5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5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1길 404-5 | 2009-04-01 | 2019-08-07 | 금귀봉 봉수대의 수비꾼이 거쳐하던 당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 |
| 6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945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전길 90 | 2009-04-01 | 2019-08-07 | 모전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 | |
| 7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938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길 50-61 | 2009-04-01 | 2019-08-07 | 행정구역명 상천을 이용하여 상천길로 명명 | |

거창군 공고 제2019-970호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

**2. 일부개정이유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주요내용**

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안 제2조)

나. 적립금 관리·운용(안 제3조)과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안 제4조)에 대한 사항 명시

**4. 시행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8. 1. ~ 2019. 8. 21.(20일간)**

## 6.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전　　화 : 055-940-3054
- 팩　　스 : 055-940-302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940-30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의안 번호 | 2019- |
|---|---|

| 제출일자 | 2019. 8. . |
|---|---|
| 제 출 자 | 기획예산담당관 |

## 1. 제안 이유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최초 조성에 따라 「거창군 재정안전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함.

##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안 제2조)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나. 적립금 관리·운용(안 제3조)

다.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2)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여성보육담당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제3조(관리·운용)**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적립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적립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시행일 : 2019.01.01)
(　　제정) 2017.03.22 조례 제2361호
(일부개정) 2018.10.31 조례 제2457호 타조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재원)**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적립금의 조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4.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적립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적립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적립금의 존속기한)**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3.22.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관 계 법 령(발췌)

## □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0. 24.]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전문개정 2011. 5. 30.]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거창군 공고 제2019-973호

# 2020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자 공모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2020년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사업명 : 2020년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 사업비 : 5,000만원/1인(경상남도 5명)
- 국비 2,250만원, 지방비 2,250, 자부담 500
❍ 신청자격 : 만18~39세 청년농업인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상의 연령(1월 1일부터) 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상응하는 증명이 가능한자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공모접수 : 2019. 8. 1. ~ 8. 16. 18:00까지
❍ 접 수 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 신청방법 및 양식 : 사업 신청서, 사업자일반현황,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신청.
(본인이 영농기반이 없는 경우 영농기반 승계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
❍ 신청분야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율형 사업(사업유형 : 신기술, ICT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3. 공모절차
가. 1차 심사 : 추천대상자 선발(농업기술센터)
○ 서류접수 : 2019. 8. 1. ~ 8. 16. 18:00까지
나. 2차 심사 : 최종선발(도 농업기술원)
○ 1차 서류심사 : 2019. 9. 6.(금) 예정
○ 2차 발표심사 : 2019. 9. 23.(월) 예정
-발표자료 준비 및 제출 : 2019. 9. 11.(수)까지
○ 최종선발발표 : 2019. 10월 중

4. 기타 자세한 절차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담당(전화 940-8188)로 문의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19-984호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 2.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나.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건전성과 합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규정된 사항 삭제

1)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2조)

2) 인력센터의 책무(안 제4조 제1항)

3) 농작업 참여자 지원금 지급(안 제8조)

4) 상시고용인력센터 관리·감독(안 제9조)

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규정 신설

1) 상시고용인력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다.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규정 사항 구체화 함(안 제3조)

라. 농작업 참여자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신청 사항 명확히 함(안 제5조~7조)

## 4. 개정조례안 : 붙임

## 5. 입법예고 기간 : 2019. 8. 6. ~ 2019. 8. 26.

##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경제교통과

2) 전화번호 : 055)940-3373, FAX : 055)940-3349

3) 전자우편 : didgusdud@korea.kr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농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부족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농작업참여자의 책무)**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구인자(求人者)·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고용인력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2.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
3.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 등

③ 군수는 인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단체·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센터에 농작업 신청을 하여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로 한다.

1. 농가,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농산물 선별장 등
2. 농작업 구직자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 숙식비
2. 농작업 참여자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등
3. 농작업 참여자 안전을 위한 보험료, 안전용품
4. 농작업 참여자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 각 호의 참여자는 제6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 각 호의 참여자는 농작업을 마친 후 센터에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거창군 공고 제2019- 990호**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8. 06.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8. 06. ~ 2019. 08. 26.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 구분 | | 양 도 인 | 양 수 인 |
|---|---|---|---|
|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7 -085호) | 발전소명 | 죽림3 태양광발전소 | |
| | 대 표 자 | 이 현 미 | 이 승 호 |
| | 소 재 지 | 대구시 동구 방촌로1길 128,501호 | 대구시 공구 동촌리 25길 69, 101동 1005호(방촌동, 유선아덴힐즈) |
| | 설치장소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01-1 (토지 위) | |
| | 설비용량 | 99kW(사업허가 용량)/97.2kW(개시용량) | |
| | 허가일자 | 2017. 07. 28. | |
| | 양수(예정)일 | 2019. 08. 06. | |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거창군 공고 제 2019 – 993 호**

# 도로구간과 도로명 변경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부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도로구간의 변경 절차)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19. 8. 2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7.

## 거 창 군 수

1.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대상 : 거창읍 지내2길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8. 7. ~ 2019. 8. 23.
3. 의견 제출 방법 : 서면<붙임 의견서>
4. 의견 제출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940-3312)

※ 도로구간 변경과 도로명 변경의 요건과 절차

| 주민의견 수렴공고 | 주민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심의결과 공고 |
|---|---|---|---|---|
| 14일 이상 | | 도로명주소 위원회 개최 | | 변경내용 및 변경절차 |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서면동의 받은 날로부터 ⇒ 10일 이내 | 고시 |
|---|---|---|---|
| | 주소사용자의 1/2이상 |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서면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
| | 주소사용자의 1/2미만 |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 구분 | 도로 위계 | 도로명 | 시점 | 종점 | 기초구간 | 길이 (m) | 폭 (m) | 기초간격 (m) | 도로구간 변경·설정 사유 |
|---|---|---|---|---|---|---|---|---|---|
| 변경 전 | 길 | 지내2길 | 거창읍 가지리 1493-2 | 거창읍 동변리 산222-5 | 1→476 | 2,375 | 26 | 10 | 칡넝쿨의 뿌리에 속한다하여 붙여진 이름 |
| 변경 후 | 길 | 지내2길 | 거창읍 가지리 1493-2 | 거창읍 동변리 산200-5 | 1→256 | 1,280 | 26 | 10 | 민원 요청에 따라 지내2길을 지내2길과 죽동1길로 변경 |
| | 길 | 죽동1길 | 거창읍 동변리 산200-5 | 거창읍 동변리 산222-5 | 1→220 | 1,090 | 26 | 10 | |

| 변경전 | 변경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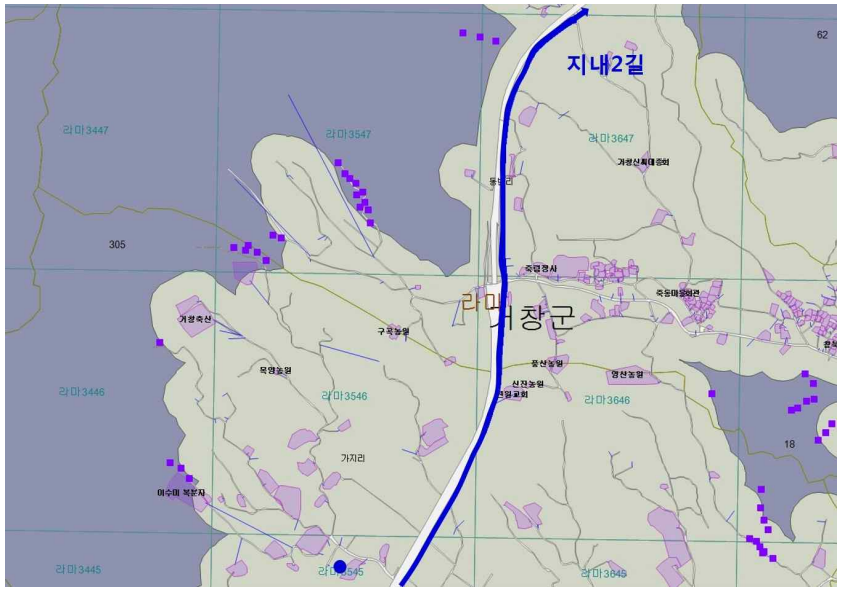 | |

<의견서제출양식>

# 의견서 제출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 | 주 소 | |
| | 전 화 | (H.P) |
| 도로구간과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 | |

위와 같이 거창군 도로구간과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 .

신청인 : (서명)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공고 제 2019 - 994 호**

# 도로명 변경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6항(도로명 부여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도로명의 변경 절차)제3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19. 8. 2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7.

## 거 창 군 수

1. 도로명 변경 대상 : 거창읍 지내길, 지내1길, 지내2길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8. 7. ~ 2019. 8. 26.
3. 의견 제출 방법 : 서면<붙임 의견서>
4. 의견 제출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940-3312)

※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부여 요건 및 절차

| 주민의견 수렴공고 | 주민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심의결과 공고 |
|---|---|---|---|---|
| 14일 이상 | | 도로명주소 위원회 개최 | | 변경내용 및 변경절차 |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서면동의 받은 날로부터 ⇒ 10일 이내 | 고시 |
|---|---|---|---|
| | 주소사용자의 1/2이상 |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서면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
| | 주소사용자의 1/2미만 |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도로명 변경 조서 및 현황도

| 일련번호 | 행정구역 | 구분 | 도로명 | 기점 | 종점 | 중앙선 | 건물번호판 | 주소사용자 | 도로명 부여(변경) 사유 | 비고 |
|---|---|---|---|---|---|---|---|---|---|---|
| 1 | 거창읍 | 변경전 | 지내길 | 거창읍 가지리 994-1 | 거창읍 가지리 1019-7 | 도면참조 | 116개소 | 96명 | 칡넝쿨의 뿌리에 속한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 민원요청 |
| | 거창읍 | 변경후 | 갈지길 | 거창읍 가지리 994-1 | 거창읍 가지리 1019-7 | 도면참조 | 116개소 | 96명 | | |

| 변경전 | 변경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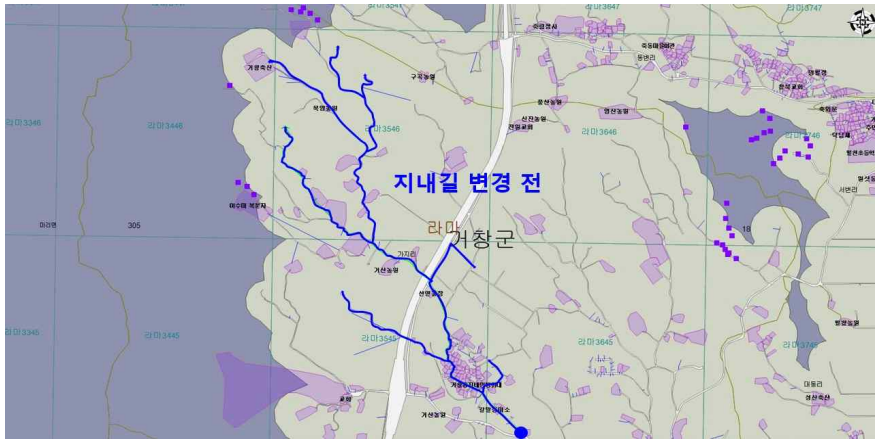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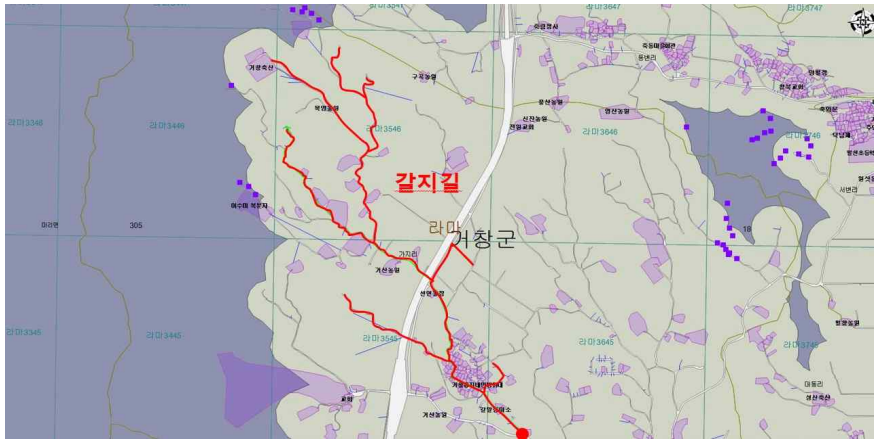 |

| 일련번호 | 행정구역 | 구분 | 도로명 | 기점 | 종점 | 중앙선 | 건물번호판 | 주소사용자 | 도로명 부여(변경) 사유 | 비고 |
|---|---|---|---|---|---|---|---|---|---|---|
| 2 | 거창읍 | 변경전 | 지내1길 | 거창읍 가지리 1441-16 | 거창읍 가지리 산250-5 | 도면 참조 | 23개소 | 22명 | 지내길을 시점으로 하여 분기되는 첫 번째 도로 | 민원요청 |
| | 거창읍 | 변경후 | 갈지1길 | 거창읍 가지리 1441-16 | 거창읍 가지리 산250-5 | 도면 참조 | 23개소 | 22명 | | |

| 변경전 | 변경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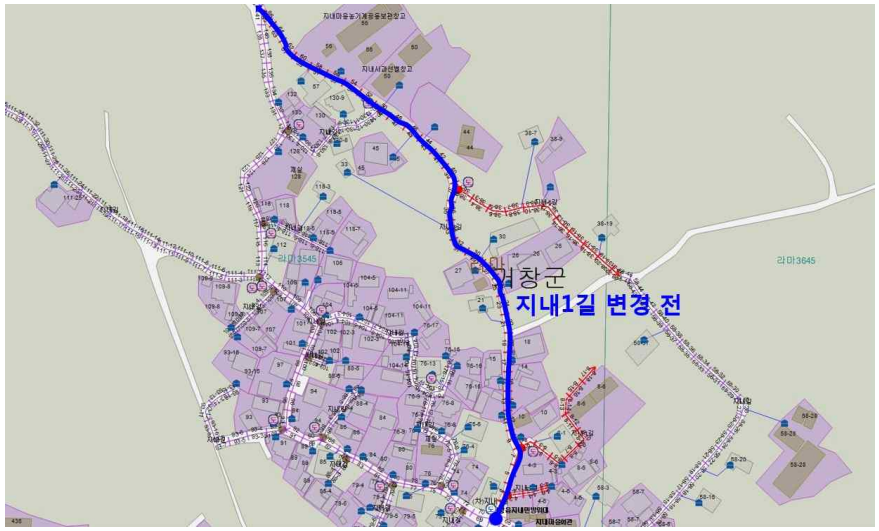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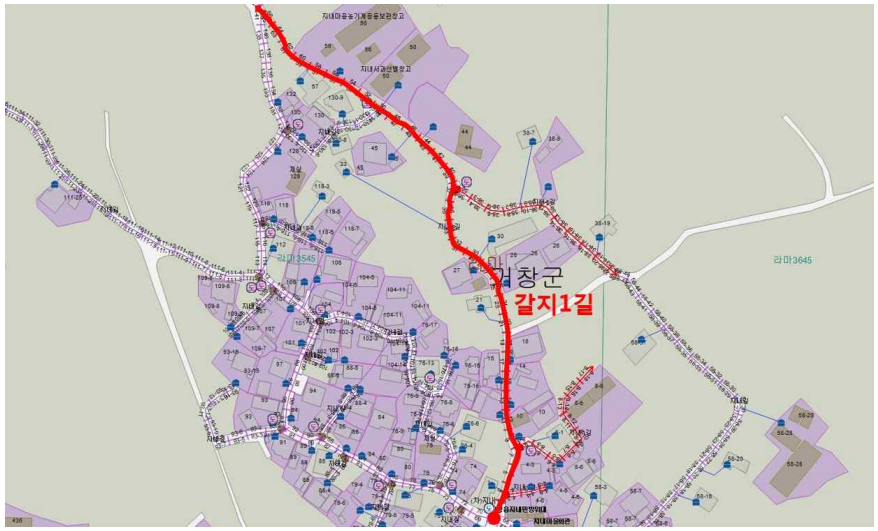 |

| 일련번호 | 행정구역 | 구분 | 도로명 | 기점 | 종점 | 중앙선 | 건물번호판 | 주소사용자 | 도로명 부여(변경) 사유 | 비고 |
|---|---|---|---|---|---|---|---|---|---|---|
| 3 | 거창읍 | 변경전 | 지내2길 | 거창읍 가지리 1493-2 | 거창읍 동변리 산200-5 | 도면참조 | 15개소 | 7명 | 지내길을 시점으로 하여 분기되는 두 번째 도로 | 민원요청 |
| | 거창읍 | 변경후 | 갈지2길 | 거창읍 가지리 1493-2 | 거창읍 동변리 산200-5 | 도면참조 | 15개소 | 7명 | | |

| 변경전 | 변경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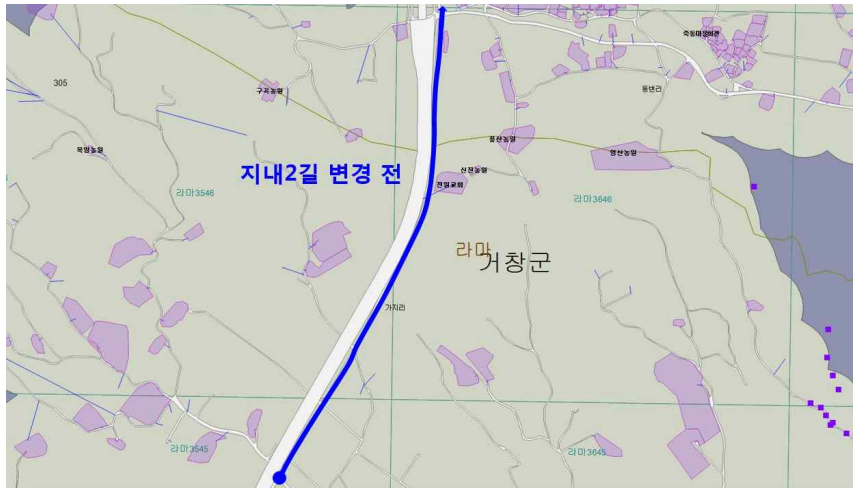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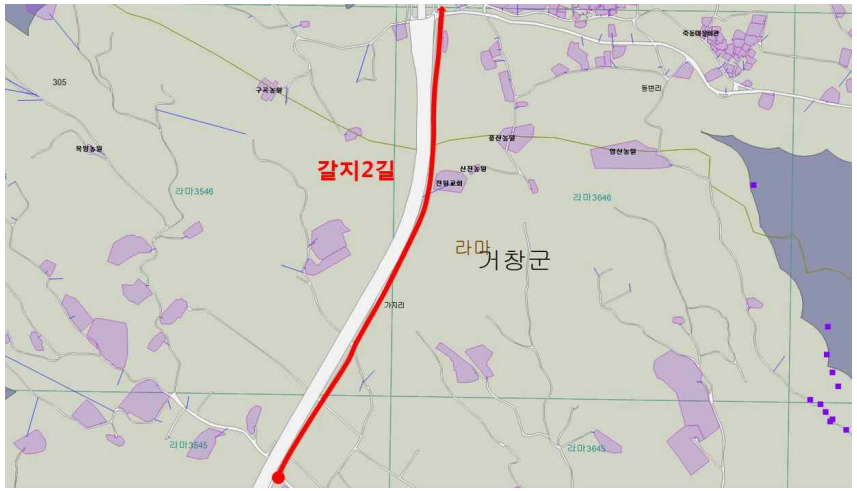 |

<의견서제출양식>

# 의견서 제출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 | 주 소 | |
| | 전 화 | (H.P) |
|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 | |

위와 같이 거창군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 .

신청인 : (서명)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 2019-18호

# 2020년 전국규모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 공고

전국규모나 도단위 또는 지역단위 체육대회 및 행사 개최지원을 통한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전국규모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0년 전국규모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

**2. 지원대상**

- 거창군체육회 또는 거창군체육회 경기가맹단체 등에서 유치·개최하는 전국규모나 도단위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단위 체육대회 및 행사

**3. 신청자격**

가. 거창군에서 전국규모나 도단위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단위 체육대회 및 행사를 유치·개최하는 거창군체육회, 거창군체육회 경기가맹단체·산하단체 등 체육관련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단체

나. 지원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도단위이상 대회 및 군단위 대회 포함 2회 이내 제한)**

**※ 경상남도내 순회 대회는 우선 배정 신청**

**※ 격년제 신청시 우선 배정**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거창군이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2019년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거나, 사업비 정산시 부당집행, 서류 미비 등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 그 밖에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4. 지원 세부내용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대회규모, 참가인원, 대회기간 등에 따라 연간지원(예산 범위내)**

**※동일단체 유사·중복대회는 2개 대회이내 지원**

○ 지원명목 : 전국규모, 도단위, 지역단위 체육대회 및 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관련 제반법령 충족

##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9. 8. 2. ~ 2019. 8. 19.(17일간)**

○ 제출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부

다. 단체 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1부

라. 거창군체육회 등 상위단체 가입증 1부

※ 법인 또는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단체 등록사본으로 갈음

**※ 제출서식은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 게재함**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체육시설사업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 문 의 처 : 체육시설사업소 스포츠마케팅담당 ☎ 055-940-8762

거창군체육회 ☎ 055-940-3927

##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1단계 : 자체심의(서류심사 - 대상사업 및 적격여부 등)

○ 2단계 :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결과통보 : 개별통보(2020. 1. ~ 2월 중)

##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대회 개최 전 개별 교부신청서 등 제출

○ 대회 개최에 따른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 8. 기타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2019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포기로 반납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정산검사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사업종료 후 보조금 정산시 당초 사업계획서상 기입된 자부담 부담에 대한 증빙자료(통장입금내역, 지출증명 영수증 등)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 그 밖에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름

**※공모신청서 접수전에 거창군체육회(사무국장) 확인 후 최종 제출**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 지원소관부서명 | 체육시설사업소 |
|---|---|

| | | | | | |
|---|---|---|---|---|---|
| 신청단체 | 단 체 명 | | | | |
| | 대 표 자 | 직명 :<br>성명 : | 등록사항 | 등록부서 :<br>등 록 일 : | |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 | | |
|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Tel.<br>FAX. | |
| | 직 원 수<br>(회원수) | ○ 상근직원 : 명, 회원수 : 명 | | | |
| 신청사업개요 | 사 업 명 | | | | |
| | 사업개요 | ·대 회 명 :<br>·추진기간 : . . ~ .<br>·장 소 :<br>·참가인원 : 명(선수 명, 관계자 명)<br>·주요내용 : | | | |
| | 사 업 비 | 천원<br>(보조금+자부담) | 보 조 금 | 천원( %) | |
| | | | 자 부 담 | 천원( %) | |
| | 담 당 자<br>(실무자) | ○ 성 명 : (직위 : )<br>○ 휴대전화 : ○ E-mail : | | | |

| 본 대회 관련 최근 3년간 郡보조금 지원사항 | 연도 | 사 업 명 | 신청액 | 지원액 | 비고 |
|---|---|---|---|---|---|
| | 2017 | | 천원 | 천원 | |
| | 2018 | | 천원 | 천원 | |
| | 2019 | | 천원 | 천원 | |

| 첨부서류 | 1. 추진 계획서 1부.<br>2. 단체 소개서 1부. |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거창군수 귀하**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 대회개요

○ 대 회 명 :

○ 대회기간 : ≪※ 개회식 : ≫

○ 대회장소 :

○ 주최/주관 :

○ 참가규모 : ○○○명(선수00, 관계자00)

○ 개최종목 : 단체전, 개인전(장년부, 노년부, 여자부)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지원요청액 : 원

(단위 : 원)

| 총 소요사업비 | % | 보 조 금 (군비)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a+b | 100 | a | | b | | |

2. 사업목적 및 내용

○

○

3. 세부일정(예시)

|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 3월 ~ 4월 | o 대회홍보<br>o 보조금 교부신청 | |
| 5월 ~ 6월 | o 선수 모집<br>o 경기장 정비 등 | |
| 7월 ~ 8월 | o 대회 개최 및 보조금 집행<br>o 보조금 정산 | |

## 4. 대회 안전대책 및 단체보험

○

## 5. 사업비 집행계획

○ 총사업비

(단위 : 원)

| 계 | 보조금(군비) | 자부담 | 비고 |
|---|---|---|---|
| | | | |

○ 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예시)

(단위 : 원)

| 단 위<br>사업명 | 재원 | 지출<br>비목 | 지출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
| 합계 | | | | 1,750,000 | |
| ○○<br>사업 | 보조금 | 계 | | 1,200,000 | |
| | | **단순<br>인건비** | ○○안내 도우미 | 200,000 | ▫ 5명*40,000원*1일=200천원 |
| | | **홍보비** | 홍보<br>플래카드 제작 | 200,000 | ▫ 4장*50,000원=200천원 |
| | | **인쇄비** | 교육용 유인물<br>제작 | 800,000 | ▫ 500부*1,600원= 800천원 |
| | 자부담 | **계** | | 550,000 | |
| | | **회의<br>참석비** | ○○회의 참석비 | 350,000 | ▫ 5명*70,000원*1회=350천원 |
| | | **물품<br>구입비** | ○○행사용<br>△△ 구입 | 200,000 | ▫ 20,000원*10개=200천원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 불가

# 단 체 소 개 서

<table>
<tr><td>단 체 명</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주소 및<br>연락처</td><td>주 소</td><td colspan="4">(우12345)</td></tr>
<tr><td>연락처</td><td>전화 :<br>신청사업 담당자 :</td><td>FAX<br>E-Mail</td><td colspan="2"></td></tr>
<tr><td>홈페이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고유번호 등</td><td>등록기관</td><td colspan="2"></td><td>등록일</td><td></td></tr>
<tr><td>법인번호</td><td colspan="4"></td></tr>
<tr><td>설립목적</td><td colspan="5"></td></tr>
<tr><td>지원근거<br>및 내용</td><td colspan="5"></td></tr>
<tr><td>단체연혁</td><td colspan="5">◦ ’00. 1. 10. : 000 창립<br>◦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br>◦</td></tr>
<tr><td>조직현황</td><td colspan="5">◦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br>◦ 단체 근무자 현황 : 명 (전무이사 1, 회장 1, ----)<br>◦ 회원수 : 명<br>◦ 조직도(기구표)</td></tr>
<tr><td>당해연도<br>예산현황</td><td colspan="5">· 예산총액 : 천원<br>-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br>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td></tr>
<tr><td>최근2년간<br>활동 실적<br>※국가,지방자치<br>단체 보조금<br>포함 작성</td><td colspan="5">※ 별지로 작성 가능,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확인 자료<br>·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td></tr>
<tr><td>당해년도<br>주요사업<br>계 획<br>※국가,지방자치<br>단체 보조금<br>포함 작성</td><td colspan="5">※ 별지로 작성 가능<br>·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td></tr>
</table>

※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거창군체육회 가입증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단 체 등 록 증

거창군체육회 가입증, 등록증, 가입 확인증

비영리법인 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